제31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서산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67호)

2026. 10.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전 문 위 원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67호

○ 제 출 자 : 서산시장

○ 제출일자 : 2026년 10월 8일

○ 회부일자 : 2026년 10월 13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10,000 해당 금액을 지방세연구기관에 출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할 의무

※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에는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3항)

2. 주요내용

○ 출연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금액 : 19,737천원

- 산출기초 : 전전년도(2025년) 결산 보통세 197,367,692천원 * 1/10,000

○ 출연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3. 출연기관 현황

○ 설립년월 : 2011. 4. 20. 개원

○ 설립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설립목적

- 지방세·재정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

○ 인력현황

구 분	계	원장	연구관련직				사무직 시설직
			연구위원직	연구원직	조사분석직	전문직 등	
정 원	78	1	24	18	8	10	17
현 원	61	1	16	10	8	9	17
총인원	91	정원외 인원 30명 (파견공무원 12, 위촉직 연구·전문·행정원 등 18)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Ⅲ. 검토의견

1. 제안목적

○ 본 동의안은「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용) 1항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법적 근거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2항에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조례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와「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2항 1호에서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절깁 및 용도 등)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나. 지방세 연구의 필요성

-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법정 의무 출연금임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되었으며, 지방세 제도의 발전, 세원 확충 방안 연구 등 지방 재정의 근간인 지방세 분야의 전문성을 제공하는 핵심 기관임

다. 출연금 산정의 적정성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1항 1호에서 출연비율을 1만분의 1로 규정함
- 해당 법령에서 정한 출연 규모로 2027년 출연금을 19,737천원으로 책정함
- 출연 비율(1.2% ⇒ 1%)과 보통세 세입결산액이 감소함에 따라 출연금이 감소함

【기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1항 1호의 비율(1.2/10,000⇒ 1/10,000) 개정(2026. 1. 1.)】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절깁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0

라. 서산시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출연금	16,779	18,978	24,304	30,104	31,465	25,999	20,938	20,731	27,302	26,827	17,964	19,737

* 2027년도 출연금 산출내역 : 2025년도 결산 보통세 197,367,692 * 1/10,000

* 2026년도 출연금 산출내역 : 2024년도 결산 보통세 179,641,674 * 1/10,000

* 2025년도 출연금 산출내역 : 2023년도 결산 보통세 223,554,608 * 1.2/10,000

* 2024년도 출연금 산출내역 : 2022년도 결산 보통세 227,514,958 * 1.2/10,000

3.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서산시가 부담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나.「지방세기본법」등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출연금 산출 또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루어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